

**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 고시**
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-5190호(2009.12.21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11-32호(2011.07.08.), 의정부시 고시 제2012-130호(2012.10.29.), 의정부시 고시 제2013-150호(2013.10.04.) 및 의정부시 고시 제2015-189호(2015.10.08.), **의정부 고시 제 2018-148호(2018.07.12.)**로 변경 고시된 『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』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(6차, 경미한 사항)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12월 24일

**의 정 부 시 장**

**1. 정비구역 지정**

- 1) 정비사업의 명칭 :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 및 그 면적
  - 가.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조서 - 변경 없음

구분	사업유형	구역명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
기정	주택재개발 정비사업	장암생활권1 주택재개발정비구역	신곡동 571-1번지 일원	37,022.0	-	37,022.0	-

**2. 정비계획 수립**

- 1)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 - 가. 장암생활권1구역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- 변경 없음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 후		
제2종일반주거지역	37,022.0	-	37,022.0	100.0	-

2) 토지이용계획 - 변경

구분		면 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고	
		기정	변경	변경후			
총계		37,022.0	-	37,022.0	100.0		
정비 기반 시설	합계	8,002.0	감) 3.5	7,998.5	21.6	무상귀속	
	교통 시설	소계	2,974.0	감) 3.5	2,970.5	8.0	
		도로	2,749.0	감) 1.0	2,748.0	7.4	
		주차장	225.0	감) 2.5	222.5	0.6	
	공원· 녹지	소계	5,028.0	-	5,028.0	13.6	
		어린이공원	1,886.0	-	1,886.0	5.1	
		소공원	2,163.0	-	2,163.0	5.8	
		완충녹지	979.0	-	979.0	2.6	폭 10m 이상
획지	합계	29,020.0	증) 3.5	29,023.5	78.4		
	일반 용지	획지1-1	6,762.0	-	6,762.0	18.3	공동주택1
		획지2-1	21,604.0	증) 4.5	21,608.5	58.4	공동주택2
		획지2-2	350.0	감) 1.0	349.0	0.9	종교시설1
		획지2-3	304.0	-	304.0	0.8	종교시설2(준치)

※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3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 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적 (m <sup>2</sup> 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37	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	의정부시 신곡동 571-1번지 일원	37,022.0	-	37,022.0	

4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. 도로 결정조서 - 변경

○총괄표 - 변경

유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	
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
합계	기정	3	440	2,749.0	-	-	-	2	166	1,948.0	1	274	801.0
	변경	3	440	2,748.0	-	-	-	2	166	1,947.0	1	274	801.0
대로	기정	1	274	801.0	-	-	-	-	-	-	1	274	801.0
중로	기정	1	68	1,145.0	-	-	-	1	68	1,145.0	-	-	-
소로	기정	1	98	803.0	-	-	-	1	98	803.0	-	-	-
	변경	1	98	802.0	-	-	-	1	98	802.0	-	-	-

※ 상기의 도로결정 재원, 연장 등의 내용은 '장암생활권1구역'내에 관계되는 사항만을 표기한 것임

※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○도로 결정조서 - 변경 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3	2	25~28	보조간선 도로	1,556 (274)	대3-5	3호 광장	일반 도로		09.12.21	
기정	중로	2	54	15	국지도로	68 (68)	대3-2 신곡동556-19	신곡동565	일반 도로		09.12.21	
기정	소로	2	53	8~10	국지도로	336 (98)	대3-2 신곡동567-1	소2-143 신곡동700-8	일반 도로		09.12.21	
기정	소로	2	54	8	국지도로	94 (-)	소2-53 신곡동567-1	소1-8 신곡동566-32	일반 도로		09.12.21	

※ ( )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

나. 주차장 결정조서 - 변경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55	주차장	의정부시 신곡동 574-2번지 일원	225.0	감) 2.5	222.5	09.12.21	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5	노외주차장	• 면적 감소 A=225m <sup>2</sup> →222.5m <sup>2</sup> , 감) 2.5m <sup>2</sup>	•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다. 공원 결정조서 - 변경 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-	공원	-	-	4,049.0	-	4,049.0	-	
기정	32	공원	소공원	의정부시 신곡동 595-11번지 일원	2,163.0	-	2,163.0	09.12.21	
기정	97	공원	어린이공원	의정부시 신곡동 459-7번지 일원	1,886.0	-	1,886.0	09.12.21	

라. 녹지 결정조서 - 변경 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14	녹지	완충녹지	의정부시 신곡동 595-10번지 일원	979.0	-	979.0	09.12.21	폭10m 이상

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- 변경 없음

- 어린이놀이터, 주민운동시설, 경로당, 보육시설, 문고 등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용

6)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계획 - 변경

○ 공동주택용지 : 획지1-1, 2-1

구분	가구 및 획지번호	구 분	계 획 내 용	
기정	1-1 2-1	용 도	허용용도	•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30% 이하	
		용적률	• 229.7% 이하 (적용용적률)	※ 「의정부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운용지침」 제5장제1절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(1등급 이상) 및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[소형분양주택(60㎡) 건설비율이 35%를 초과하는 경우] 조건내용을 사업승인시 반영하였을 경우 추가용적률 20.3%를 적용함.
			• 250.0% 이하 (추가용적률 조건이행시)	
			• 250.0% 이하 (예정법적상한용적률)	
		높 이	• 90m 이하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</li> <li>• 주변 개방감 확보를 위한 탑상형 권장</li> <li>•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</li> </ul>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은 주변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위한 조형적 지붕으로 하되, 일자형이 아닌 경사지붕으로 설치</li> <li>•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상시설물(물탱크, 기계실)은 가능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유도</li> <li>• 옥외공간의 단절 및 효과적인 보행동선체계를 위한 피로티 설치</li> </ul>	
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</li> <li>• 「의정부시 경관기본계획」, 경관색채계획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단지내 통일되도록 계획</li> </ul>			
건축선	건축한계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남측 대로 3-2호선변 폭 5m 이격하여 지정</li> <li>• 서측 소로 2-53호선변 폭 12m 이격하여 지정</li> <li>• 중앙부 중로 2-54호선변 양측 폭 2m 이격하여 지정</li> </ul>		
변경	1-1 2-1	용 도	허용용도	•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30% 이하	
		용적률	• 229.66% 이하 (적용용적률)	※ 「의정부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운용지침」 제5장제1절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(1등급 이상) 및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[소형분양주택(60㎡) 건설비율이 35%를 초과하는 경우] 조건내용을 사업승인시 반영하였을 경우 추가용적률 20.3%를 적용함.
			• 249.96% 이하 (추가용적률 조건이행시)	
			• 250.0% 이하 (예정법적상한용적률)	
		높 이	• 90m 이하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</li> <li>• 주변 개방감 확보를 위한 탑상형 권장</li> <li>•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</li> </ul>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은 주변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위한 조형적 지붕으로 하되, 일자형이 아닌 경사지붕으로 설치</li> <li>•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상시설물(물탱크, 기계실)은 가능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유도</li> <li>• 옥외공간의 단절 및 효과적인 보행동선체계를 위한 피로티 설치</li> </ul>	
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</li> <li>• 「의정부시 경관기본계획」, 경관색채계획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단지내 통일되도록 계획</li> </ul>			
건축선	건축한계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남측 대로 3-2호선변 폭 5m 이격하여 지정</li> <li>• 서측 소로 2-53호선변 폭 12m 이격하여 지정</li> <li>• 중앙부 중로 2-54호선변 양측 폭 2m 이격하여 지정</li> </ul>		

※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용적률 변경

■ 추가용적률 계획 (변경없음)

구분		내용	추가용적률	적용
계				20.3%
①	친환경건축물	최우수(그린1등급)(74점이상)	6%	미적용
②	에너지효율등급 인증	1등급 이상	5%	적용 (5%)
③	공개공지	부지면적의 5%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	1%	미적용
④	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	소형분양주택(60㎡)건설비율이 35%를 초과하는 경우	산식에 의거 부여	적용 (15.3%)

※ 용적률 적용방법

- 적용용적률 : 229.66% (「의정부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운용지침」에 따른 기반시설확보기준 등에 의거 산정)
- 추가용적률 : 20.3% (「의정부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운용지침」에 따른 조건내용을 사업승인시 반영하였을 경우 적용용적률에 가산하여 적용)
  - 에너지효율등급 인증(1등급 이상) : 5%
  -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[소형분양주택(60㎡)건설비율이 35%를 초과하는 경우, 산식에 의거 부여] : 15.3%
- 예정법적상한용적률 : 250%
 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2.12.28.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)를 거쳐 법 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,
  -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50을 곱한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60㎡이하의 소형주택(임대)을 건설하는 사항을 사업승인시 반영하였을 경우 적용.
- 획지 1-1 및 획지 2-1은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함.

○ 종교용지 : 획지2-2, 2-3

구분	가구 및 획지 번호	구 분	계획내용	
기정	2-2 2-3	용 도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복 (종교집회장에 한함)</li> <li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</li> </ul>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	건폐율	• 60% 이하	
		용적률	• 229.7% 이하	
		높 이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 위주로 배치유도</li> <li>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</li> </ul>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상시설물(물탱크, 기계실)은 가능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유도</li> <li>옥외공간의 단절 및 효과적인 보행동선체계를 위한 피로티 설치</li> </ul>	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</li> <li>「의정부시 경관기본계획」, 경관색채계획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되도록 계획</li> </ul>	
건축선	건축한계선	• 소로1-8호선변 폭 2m 이격하여 지정		
변경	2-2 2-3	용 도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복 (종교집회장에 한함)</li> <li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</li> </ul>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	건폐율	• 60% 이하	
		용적률	• 229.66% 이하	
		높 이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 위주로 배치유도</li> <li>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</li> </ul>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상시설물(물탱크, 기계실)은 가능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유도</li> <li>옥외공간의 단절 및 효과적인 보행동선체계를 위한 피로티 설치</li> </ul>	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</li> <li>「의정부시 경관기본계획」, 경관색채계획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되도록 계획</li> </ul>	
건축선	건축한계선	• 소로1-8호선변 폭 2m 이격하여 지정		

※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용적률 변경

7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- 변경 없음

구 분	계 획 내 용
환경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밀도 및 세대수 증가로 부족해지기 쉬운 녹지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 확보</li> <li>○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확보</li> <li>○ 보행자도로와 녹지축을 함께 배치한 보행자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안전을 확보</li> <li>○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 확충으로 생활의 질 높임</li> <li>○ 「2010 의정부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환경계획에 의거 생태면적을 기준에 맞춰 확보 및 조성</li> </ul>
재난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도로 확폭 및 신설로 대상부지 및 인근부지를 도로망으로 연결하여 화재발생 및 비상시 재난으로부터 안정성 확보</li> <li>○ 건축물 및 기타구조물을 내화구조로 하여 방재성 향상</li> </ul>

8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- 변경 없음

구 분	계 획 내 용
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학교보건법」의 기준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제한하고 문화시설 및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</li> <li>○ 장암생활권1구역 학교환경위생구역반경 200m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주택지, 종교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, 학교의 보건·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환경위생구역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음</li> </ul>
교통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비구역내 인근 초등학교 주변으로 스쿨존지정 및 과속방지턱 등의 차량속도 저감 대책 마련</li> <li>○ 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</li> </ul>
보행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경우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 스쿨존 지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</li> </ul>

9)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- 변경 없음

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8조제7호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</li> </ul>

10)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- 변경 없음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

1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 - 변경 없음

결정구분	구역구분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	계	존치	개수	철거후신축	철거이주	
기정	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	의정부시 신곡동 571-1번지 일원	100	1	-	99	-	

12)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- 변경 없음

도면번호	위치(획지)		계획내용		비고	
1	1-1,2-1	공동주택	건축 한계선	○ 남측(대로3-2호선)변	폭5m	○ 인도 부속형 대지 내 공지조성
2	1-1			○ 서측(소로2-53호선)변	폭12m	○ 하천과 조화된 녹지공간 조성
3	1-1,2-1	공동주택		○ 중로2-54호선변 중앙부 양측 및 소로1-8호선변	폭2m	○ 인도 확폭 기능의 보도 조성
	2-2	종교시설				

13)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- 변경 없음

14)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- 변경

구분	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<sup>2</sup> )	획지			비고
				획지번호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
기정	1-1	1	6,762.0	1	의정부시 신곡동 566-8번지 일원	6,762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2-1	2	22,258.0	1	의정부시 신곡동 572번지 일원	21,604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2-2			2	의정부시 신곡동 574번지 일원	350.0	종교시설
	2-3			3	의정부시 신곡동 583번지	304.0	종교시설(존치)
변경	1-1	1	6,762.0	1	의정부시 신곡동 566-8번지 일원	6,762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2-1	2	22,261.5	1	의정부시 신곡동 572번지 일원	21,608.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2-2			2	의정부시 신곡동 574번지 일원	349.0	종교시설
	2-3			3	의정부시 신곡동 583번지	304.0	종교시설(존치)

※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15)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- 변경 없음

○ 임대주택 건설비율기준은 의정부시 고시 제2015 - 149호 『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』에 의거 아래와 같음

1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2 제1항 및 『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』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27호) 3-4항 가호 및 경기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15-120호)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퍼센트로 함
2.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음

계획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</li> <li>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증가된 세대수는 전체세대수에서 제외</li> <li>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</li> </ul>

16)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- 변경 없음

구분	내용
기본방향	○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
활용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수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목을 선정하여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식이 용이하면, 미적·실용적 가치가 있는 수목</li> <li>- 식재지역의 환경에 적응성이 큰 수목</li> <li>- 시장이나 묘포에서 구입이 용이한 수목</li> <li>- 각종 번식법에 의하여 생산이 가능한 수목</li> </ul> </li> <li>○ 「조경계획·설계지침」에 근거하여 활용 가능한 수목을 선정하며, 공동주택내 조경시설 및 공원·녹지에 활용</li> </ul>

17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- 변경

-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

획지번호		계 획 내 용	
1-1	차량출입 허용구간	기정	○ 중로2-54호선 일부구간에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
2-1		변경	○ 중로2-54호선 일부구간에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- 건축위원회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른 차량출입허용구간 확대
1-1	차량출입 불허구간		○ 대로3-2호선 및 중로2-54호선, 소로2-53호선 일부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
2-1			○ 대로3-2호선 및 중로2-54호선 일부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
1-1	공공보행 통로		○ 획지1-1 북측경계변으로 중로2-54호선에서 중랑천으로 보행활성화 유도 및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지내 통로 조성 ○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보도 및 도로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○ 대지내 통로에는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

3. 관계도서 : 생략

-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(031-828-4593)에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 결정 및 승인도서 등  
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